

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6. 5. 2.
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6. 4. 13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6. 4. 13.
- 다. 상정일자 :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06.5.2)
상정, 심사, 가결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김경숙 가정복지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「건강가정기본법」에 따라 가족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장소로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(안 제2조)
- 센터의 기능으로는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·상담 및 치료,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, 가정생활 문화운동전개,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함.(안 제3조)

- 시설은 교육실, 상담실,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도록 함.(안 제4조)
- 조직은 센터 장을 포함 최소 4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하고, 센터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비상근(겸직)으로 할 수 있으며 나머지 종사자는 상근함을 규정.(안 제5조)
-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.(안 제6조)
-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하며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.(안 제9조)
-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수시 지도·점검할 수 있고 설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1조, 제12조)

3. 검토보고의 요지(김건재 전문위원)

- 가정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, 가치관 형성 등을 담당하는 최초의 환경이며 다음 세대가 요구하는 인적자원을 배출하는 사회의 기본 단위로써 건강한 가정이 밑거름이 되어야 그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임.

그러나 오늘날 만연하고 있는 가정폭력, 청소년 비행, 이혼증가 및 청년 실업 등 가정문제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.

따라서 과거 사적인 영역의 가정사로만 여겨지던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는 사회의 도움과 지원이 절실한 문제로 대두되었고, 국가와 각 지자체에서도 가정문제의 해결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, 친가족적 사회환경 조성 등에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음.

-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(2006.3.29 대통령령제19431호) 제14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구조의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·상담 운영 및 지역사회의 가정생활 문화 변화 유도과 개별가정의 욕구에 부합하는 직접서비스 제공 등 지역주민의 가정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관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,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가정문제 예방·상담 및 치료,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.
-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동 센터에는 센터장, 가정상담팀, 가정교육팀, 가정문화팀을 두고 상근 종사자는 최소 4인이상으로 하되,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고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·상담실·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,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건강가정사 1인 외에 대부분의 인력이 소관부서 담당 공무원과 중복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시설의 협소 및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요지(이매숙 위원) : 동별로 확대하여 설치할 예정인가?
- 답변요지(김재형 생활복지국장) : 구 1개소에만 설치함.

- 질의요지(박영길 위원) : 예방기능과 신고기능을 가지고 있는지?
- 답변요지(김경숙 가정복지과장) : 예방 및 상담 기능을 수행함.
- 질의요지(이천규 위원) :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자가 상담하는지?
- 답변요지(김경숙 가정복지과장) :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소지한 비전임계약직을 채용예정임.
- 질의요지(이종일 위원) : 처음부터 전문가에 위탁하여 발족시키는 것이 어떨지?
- 답변요지(김재형 생활복지국장) : 기본틀을 잡은 후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임.
- 질의요지(김순금 위원) : 7,000만원이 전액시비인가?
- 답변요지(김경숙 가정복지과장) : 전액시비임.
- 질의요지(송태섭 위원) :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실시하기 바람.
- 답변요지(김경숙 가정복지과장) : 예, 알겠습니다.
- 질의요지(한대운 위원) : 안 제3조의 기능이 타부서의 기능과 중복이 되니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.
- 답변요지(김재형 생활복지국장) : 예, 알겠습니다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 타 :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6. 4. 12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「건강가정기본법」에 따라 가족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가.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장소로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 (안 제2조)
- 나. 센터의 기능으로는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·상담 및 치료,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, 가정생활 문화운동전개,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 함. (안 제3조)
- 다. 시설은 교육실, 상담실,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도록 함. (안 제4조)
- 라. 조직은 센터 장을 포함 최소 4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하고, 센터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비상근(겸직)으로 할 수 있으며 나머지 종사자는 상근함을 규정.(안 제5조)

- 마.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. (안 제6조)
- 바.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하며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. (안 제9조)
- 바.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수시 지도·점검할 수 있고 설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11조, 제1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
- 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」 제14조

나. 예산조치 : 서울시 특별교부금 70,000천원

다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라. 참고사항

- (1) 입법예고 : 2006.1.19~2.8(20일간)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음
- (2)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1부. 끝.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마포구(이하 “마포구”라 한다)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및 명칭 등) ①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② 센터 명칭은 “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”로 한다.

③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센터 명칭 표시는 별표 1과 같다.

제3조(기능)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·상담 및 치료
2.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
3. 마포구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
4.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
5.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
6.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

② 제1항의 기능 중 마포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.

제4조(시설)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·상담실·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제5조(조직) ① 센터는 센터장, 가정상담팀, 가정교육팀,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.

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,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(겸직)으로 할 수 있다.

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,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.

제6조(위원회 운영)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.

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자원봉사자)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.

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,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.

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강사)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.

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.

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)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.

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.

1.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「민법」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
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0조(주민참여)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1조(지도감독)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·점검할 수 있다.

제12조(센터의 지원) 구청장은 센터 설치·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 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조례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.

【별표 1】

명칭 :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

마 포 구
건 강 가 정 지 원 센 터

건
강
가
정
지
원
센
터

마
포
구